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7005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4구합7194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40,122,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지방교육세 7,559,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5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